

AB2 113

Mc. C. 21

얼굴 내밀기 ☺☺☺

-성폭력 학생 회칙 제정을 위한 자료집



인문대 여학생 동아리 여우방
제 16 대 인문대 학생회

인문대 새터가 왜 문제인가요?

나는 단지 재미있게만 생각했던 97년도 00과 새터공연에 왜곡된 성의식이 담겨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00과 새터공연은 대강 이런 내용이다. 새내기(여학생)가 같은 과 남자 선배를 좋아한다. 첫 눈에 반해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던 중 과 내 술모임이 벌어진다. 먹고 마시는 광란의 술자리에서 남자선배를 좋아하는 새내기는 술에 취해 잠이 든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문제가 된 '꿈' 부분이다. 꿈에 좋아하는 선배가 나오고 두 사람은 곧 이불 속으로 가려져 발과 손으로 이불을 툭탁거리며 선행위를 암시한다. 그 와 함께 한 쪽에서는 신음 소리를 내고 다른 한 쪽에서는 남학우 4명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노골적이라 할 만한 장면을 연출한다. 세 명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고(왜곡된 성의식 운운하는 쪽에서는 거창하게도 '스크럼을 짜고'라고 표현했다) 한 명을 원 안으로 들어간다. 세 명이 만든 원은 아래위로 일어섰다 앉았다가 반복하고 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열광하는 표현을 한다. 그러다가 암바사를 내뿜는다. 그 후 잠이 깬 새내기는 그것이 꿈이었음을 슬퍼한다.

이 공연이 노골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왜곡된 성의식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재미있게 만들자는 의도였고 공연한 남녀 학우 모두 동의한 내용이었다. 어느 쪽을 성적 대상이라고만 본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성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 중하나이다. 하지만 성적 표현의 자유와 이 공연을 만들 때의 상황과 의도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과 그저 담론의 한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성폭력을 은근히 두둔하는 내용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강간을 소재로 한 자연대 새터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단지 노골적인 성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지에 있는 성담론을 양자로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동의되고 양성이 모두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 왜 자유롭게 표현된 성묘사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모르겠다.

새터 촌극이 설 자리는?!

...여기는 고래 배속. 여우같인지 고래 배속인지 턱을 잡고 앉은 여우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끝이 없는데...

여우 1 자연대 새터 사건, 말이 많던 걸. 멀 그 정도 갖고 그러냐는 등, 이 김에 그런 촌극은 끝을 내야 한다는 등...

여우 2 사실, 97년 인문대 새터에서도 그런 촌극이 있지 않았니? 성행위 장면을 상징적이라기엔 너무 노골적이라 이력궁저려쿵 말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그냥 넘어갔지, 아마.

여우 3 아, 그 촌극! 나도 봤었어. 그게 어때서? 난 오히려 그런 내용을 솔직히 무대 위에 올려서 좋았었는데. 내용도 어차피 여자의 의지대로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였잖아, 꿈에서. 여성도 당당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 이거 바람직한 거 아냐?

여우 1 나도 재밌게 봤었어. 성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리버럴하고 좋았잖아?

여우 2 글쎄, 그게 성적으로 리버럴한 거야? 나도 성적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것엔 찬성하는데 말야, 그 촌극이 과연 그런 거였니? 난 페니스 중심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장면을 보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었는데... 여성의 육체에만 계속 카메라의 초점이 주어지는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야. 정말 성해방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말야,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려져야 하지 않았을까?

여우 4 나도 기분이 나빴었어. 앞에선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은 섹스 중독자처럼 노골적으로 그리더니, 뒤에 가선 남녀 둘이 뒹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성기를 삽입, 사정하는 걸 암시하는 장면만 자꾸 보여주고. 그게 뭐야? 자기 욕구를 채우려던 여자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지? 대체 그 촌극의 초점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 한 여자의 성욕 표현이니, 남자 중심의 성관계 보여주기니?

여우 1 음, 너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난 충격적이지만 재밌는 촌극이

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 자연대 새터 사건, 그거 말야, 강간 장면 나오는 건 잘못된 걸 알겠는데, 그 '정력맨' 부분까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여우 3 '정력맨'이라니?

여우 1 으응, 그 촌극 첫 부분에서 '정력맨'이라고 자길 소개한 남학생이 나와서, 배 앞에 손을 대고서는 잡고 휘두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이 크고 멋진 물건을 휘둘러 대면 여자들이 모두...' 이런 소릴 했거든. 뒤에 허리 미는 시늉을 하면서 여자 신음 소리도 좀 내고. 글쎄, 정력이 좋다는 건 성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얘긴데, 그럼 여자들도 좋은 거 아냐? 그냥 자신이 성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리 잘못된 걸까?

여우 4 그럼 정력 없는 남자들은 뭐야? 개낸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꺼구, 그럼 그것도 일종의 억압 아닐까?

여우 3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치만 남녀의 관계만 놓고 살핀다면, 남자는 정력이 좋고 그럼 여자는 그냥 성적으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나빠?

여우 2 어째서 그래? '정력맨'이 왜 자기 정력을 자랑해 대는 건데? 자진 성적으로 여자 만족시키 수 있다는 거 아냐. 그럼 그 여잔 뭐야? 자기 정력을 자랑해 보일 대상이 뿐이잖아. 결국 '정력맨'은 둘이서 함께 성적 만족을 맛보자는 게 아냐. '난 이 여자 통해서 내 성적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거지 뭐.

여우 3 듣고 보니 그러네... 만일 여자애가 나와서 '정력우먼'하면서 난리치면, 뭐 저런 색녀, 변태가 다 있나고, 보기 민망하다 그리고 막 야유하고 그랬을 텐데. 역시 쪽수가 깡패가? 아님, 남자들이 깡패가?

여우 4 남자 깡패가 많긴 많지.

여우 1 더 무서운 건 여자 깡패들이라예잖아.

여우 2 그런 것도 여왕이면 괜히 표독했다느니 하면서 폭군으로 그리고 하는, 그런식의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닌가? ...

...오늘도 여우들은 여해를 유유히 가로지르며 삼천포로 어디로 나아가는데...

성폭력?

성폭력을 정확히 정의내리자.

성폭력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는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강간, 윤간등 등의 수많은 다른 개념들이 있다. 그렇다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간과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강간은 성관계(성기삽입)가 이루어진 것이며, 성희롱은 그보다는 신체적 접촉이 가벼운 정도의 것이라는식의 대답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희롱과 강간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해 단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성폭력을 단지 성관계로만 인식하여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 폭력의 기준과 그 처벌의 기준을 잡게 될 경우, 그 속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는 사라지고 여성의 인권은 침해되고 만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모두 성폭력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물론 성폭력의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여성일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에게도 같은 경우의 성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성폭력의 피해자가 대다수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위 글에서 여성은 모두 인간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있어서 신체접촉이나 성기삽입과 같은 모호한 기준은 필요치 않다. 성폭력은 단지 성폭력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폭력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정할 뿐이다. 하나되고 통일된 '성폭력'이라는 담론 속에서 또 다른 기준 없이 '성폭력'을 근절시켜내야 한다.

일상이 악몽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

이제 평범한 관악의 한 여학우의 일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강의 시간에 맞춰 서둘러서 탄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적인 접촉으로 인한 성폭력에 시달려 보지 않은 여학우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성폭력은 남성들만이 모르는 혹은 모르고 싶은 비밀이다.

그녀는 강의 도중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정체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평화하는 내용을 듣기도 하고 학생회의 공개적인 행사 장소에서 남성성기증심적이고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한다. 학회실과 뒤풀이 장소에서 혹은 MT등에서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 사고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무수하게 겪게된다.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지극히 보통 수준의 그 여학우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혹은 별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잘모여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무시하게 되고 만다. 그만큼 너무나 일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무나 흔한 현상이기에 어쩌면, 언어적 폭력이나 음담패설, 여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 여성의 성을 성적인 대상물로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성폭력인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성폭력이며, 성폭력이 성기삽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한 권력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의 문제...

어떤 의미에서 성폭력은 지나치게 이슈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식상한 주제일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성폭력이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어느 정도 공론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의 범주를 극단적인 강간만을 포함하며, 정조의 상실 등을 성폭력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성폭력을 다루는 제도적인 시각 속에서 여성은 아직도 정조를 빼앗긴 여자, 유린당한 천진한 소녀의 이미지로 존재할 뿐,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민주社会의 당당한 성원이며 자신의 시민권을 가진 주체라는 관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강간이나 추행에 관한 법안식은 아직도 구시대적이며,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수많은 성폭력들은 아예 법의 관심범위를 벗어나 있다.

우리 형법에는 강간 이외에 강제 추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미루어 일단 이것이 강간보다는 죄질이 가벼운 성폭력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더나 강제추행은 가벼운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추행에는 전라 상태로 만들거나 성기 이외의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동성간의 성폭력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주 심한 추행만이 포함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고의적인 신체접촉 정도는 형법상 성추행이 되지 않는다.

추행의 판단 기준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라는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이 '일반인'이란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법관의 느낌이 기준이 되며 아직도 대부분의 법관이 남성인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 여성의 실제 수치심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남성의 기준을 '일반' 또는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부과할 우려가 크다. 강간 피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갖 정황(밤늦게 길을 혼자 걸었다는 데, 혹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는...)이 다 참작되어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면, 추행 피해자의 수치심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단되고 마는 것이다.

성희롱은 우리 나라에서는 신고수-우조고 사건을 계기로 소개되었다. 이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이를 다른 법조항은 전혀 없다. 그러나 매스미디어 등에서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도 성희롱의 문제제기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도 내용 역시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희롱의 문제제기가 남성의 입장에서 이슈화되고 지나치게 회화화되고 있다.

마치며

성폭력은 특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남성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여성들의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은 여성 자신에게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속에서 남성에게도 억압이 될 수 있다.

성폭력학칙은 왜 필요한가요? 관련학생회칙은 또 무엇이죠?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당사자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다 해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죄하는 사회의 보수적 시각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

지금까지는 사건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여성운동단위나 학생회를 주축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해결을 촉구하고 공론화 시키는 역할을 해 왔지만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형태로서 사건 중심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해자 처벌이 모든 사건의 귀결인 양 되어버리며, 사건 자체의 가시적 종결이 해결로 보여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미봉책만이 현실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근본적인 성폭력의 근절-예방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 처벌조차도 현실의 벽에 의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하였는데, 도덕적 의무 외에는 대학당국을 사건해결에 나서게 할 근거가 없는데다가 학생회 조직 역시 단기적인 대응정도 밖에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갈 뿐이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논의는 처음부터 시작하며 그 대응은 주먹구구식의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폭력관련학칙은 자치규약의 형태로 적용되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고통을 주릴 수 있다. 자치규약은 그 내부구성원에게 있어 규범으로서의 영향력을 지니며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재와 달리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징계와 재교육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을 밟음으로써 지루한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되게 된다.

성폭력 학칙은 이러한 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선적으로 예방의 의미도 가진다. 성폭력은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폭력이며 따라서 분명한 '범죄'이다. 성기 중심적인 성문화로 인해 성폭력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성관계로 사고하거나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음으로써 학칙제정은 학내 성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법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판례를 변경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학내에서의 자치규약 만들기, 즉 학칙제정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하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과 새로운 담론 형성의 시작이며 성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투쟁인 것이다. 성폭력학칙은 성폭력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성적 자율권)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서 새로운 여성적 관점을 제기하고 사회의식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학칙제정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학생회칙은 학생공동체 내부의 자치질서의 구성을 위한 과정 그 자체이다. 이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로의 재구성을 위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성폭력에 관한 여성적 담론을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우리 삶의 전반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작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악여성모임연대 자료 中 발췌 정리

왜 공개사과인가?

-공개사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3월의 성폭력 공개사과문에 대한 관악 학우들의 수많은 관심과 염려와 비판을 기억한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많은 학우들의 반대에 대해서 깊이 속고해 보았으나, 여전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공개사과의 형태를 떠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폭력이 행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지하철이나 버스, 도서관 등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의 경우 그것은 철저한 의명성의 탈을 쓰고 진행된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폭력이나,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등의 경우는 좀더 특수하지만, 이것 역시 그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 전제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가해자의 기대와 맛아떨어진다.

따라서 성폭력의 경우 그것이 행해지거나 계속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의명성과 은밀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해자가 실명화되어 공동체 내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전제 조건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해 오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써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단순한 보복심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신체적, 성적 권리를 박탈하고 유린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조건인 의명성과 은밀함, 피해자는 깨뜨리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밝힌 '공개사과'의 형태를 떠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과'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가해자가 실명화 되어 공동체 내에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낙인찍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명백하게 공개 '사과'의 형태이고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공동체의 용서를 빠는 행위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강제적이지 않다. 그것은 가해자 자신의 용기와 결단에 의한 것이며 적극적인 행위이다. 만약 공개사과문을 쓴 사람들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쓰게 된 불쌍한 놈'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빠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성폭력은 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권력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이다. 그러나 성이 우리사회에서 일종의 금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금기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억압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폭력과 구별되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이며,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성폭력은 대부분 신고되지 못한 채로 피해자의 가슴속에 큰 상처로만 평생을 남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성폭력의 가해자는 사건 당시를 끌어지만 않으면, 사건이 알려져 자신이 처벌받게 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성폭력이라는 비인간적인 범죄를 행함과 동시에 그는 일종의 방패막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의 공개사과에 대해 그것은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다고 한 사람이 있지만, 현실에서 과연 누가 주홍글씨를 달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에서 과연 어느 쪽이 주홍글씨를 달았는가? 아직도 당당하게(!)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신교수인가, 결국 대학을 나가고 직업을 잊게 된 우조교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멀다. 약대 성폭력 사건도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이 이 싸움에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주홍글씨를 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악여성모임연대

쉬어가는 쪽 - 설문지에 있는 문제 풀이

문제 1 : 1996년 4월에 일어난 성전환자에 대한 납치, 윤간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자는 호적상 남자였지만 수술을 통해 온전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범인들은 분명 여성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어 스스로 여성으로서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생물학적 재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

문제 2 : 다음 두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강간미수로 기소된 경우지만, 한 사건에서는 강간의 착수가 인정되었고 다른 한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강간미수로 판결되었을까요?

A사건)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서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도망했다.(1990.5.25 대법원 판례)

B사건) 피고인이 간음을 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 (1991.4.9 대법원 판례)

- A사건의 피고인은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까지 했지만 B사건에서는 침입하려는 시도에서 행동이 그쳤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A사건은 무죄였고 B사건에서만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A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억압'하는 폭행과 협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두 사건의 피고인들은
둘 다 강간을 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A 사건의 피해자도 잠을 깨 즉시 소리를 질러 반
항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의 실제적인 차이는 단지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느냐 깨어
있었느냐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겠다. 결국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남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여성의 치부를 만진 행위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강간(미수)이나 아니나를 따지는
기준이 여전히 피해자의 저항 유무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문제 3 : 다음 중 강제 추행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일까요?

- ① 전라상태로 만들기
- ② 성기 이외의 이물질을 삽입
- ③ 동성간의 성폭력
- ④ 공공장소에서의 고의적 접촉
- ⑤ 원하지 않는 입맞춤

- 강제추행은 ①②③입니다.

-「여성과 사회 8호 참고」

성폭력 방지와 해결을 위한 학칙 (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대학사회구성인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
해결하기 위한 구제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행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
는 경우

2)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
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3조(대상)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수, 교직원,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항 교수는 전임강사 이상을 학생은 본교재적생을 교직원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해
일용직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를 포함. 단 외인교수, 교환학생은 제외한다.

제2항 단, 가해자와 피해자중 일방이 제1항의 적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 용된다.

제3항 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며,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4조(적용시한)

적용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본 규정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시한 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5조 (피해자의 신고와 신고 기구)

제1항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직접 방문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학생활 연구소 여학생부,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 대표기구, 학내 여성 관련 단체에 신고한다. 기타 성폭력 관련 상담소(외부단체)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는 피해자가 진다.

제2항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제6조(신고자 보호)

제1항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비밀을 보장한다.

제2항 본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신고자가 이후에 가해자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7조(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

신고된 학내 성폭력의 효과적인 해결과 방지를 위하여 대학총장, 학부 및 대학연생 대표, 교직원 대표가 등등하게 참여하는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②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 ③ 피해자 보상과 치료
- ④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 ⑤ 제6조에 대한 적용 처리

2) 위원회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징계 및 재교육)

본 규정의 적용은 형사상의 적용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제1항(징계) 아직 결정 못했음 (다시 첨가하여야 함)

제2항(재교육) 위원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16대 인문대 학생회칙 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여 학생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인격적인 환경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의 개념)

제1항 성폭력이라 함은 사회의 성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기회에서 여성은 배제시키는 물리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포함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성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2항 제1항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별사안에 대한 판단은 중재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대상)

16대 학생회 구성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해자, 피해자 쌍방이 해당될 경우는 물론 어느 일방이 해당될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피해자의 보호)

제1항 신고 접수시부터 사건의 조사 및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조사징계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인다.

제2항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 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항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차적 폭력에 처하거나 기타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적극 방지한다.

제5조(신고인)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그런 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공감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방법과 신고 기구)

신고자는 본인 스스로나 대리인을 통해 서면이나 직접 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과학 생회, 단대학생회 및 학내 여성관련 단체에 신고한다.

제7조(조사장계위원회)

제1항(구성)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속한 과학생회와 단대 학생회 담당자 및 관련 단위 여성단체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제2항(역할)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② 가해자 징계 회부 및 재교육
- ③ 피해자 보호

제8조(징계)

제1항 강제적 징계사항은 명예형으로 한다. 가해자는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조사장계위원회는 인쇄매체 및 대자보를 통한 사건을 공개한다.

제2항 조사장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 경고장 발송 후 동 가해자에 의해 사건이 재발되면 징계에 임한다.

제3항 기타 징계사항은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가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성폭력 담당 기구의 설치)

단과대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 내 이를 책임질 사람을 둔다.

오만큼만 더 고민해봐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인문대 내규로서의 성폭력 학생회칙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아직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폭력 학칙'이 아닌 '단대 학생회칙'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학생회칙이라는 것은 학칙에 비해 그 범위와 구속력이 덜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나 여타 학생 신분이 아닌 이들, 곧 교직원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회칙상 명기가 되어있긴 하나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여러 성폭력 관련 사건들의 대다수가 은폐되거나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본부의 협조없는 단대 학생회칙의 적용은 실로 많은 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본부와의 협상을 통한 학칙이 제정될 경우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함은 물론이고 지난 신교수, 구교수 사건과 같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을 규제할 수가 있게 되며, 학우들 간의 인지도도 그만큼 높아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미 부산 동아대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교수들과 학생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성폭력 학생회칙은 성폭력 학칙 제정의 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후원과 참여가 있을 때만이 학칙제정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며, 나아가 성폭력과 차별이 없는 인문대가 태어날 것입니다.

둘째, 남녀 간의 성폭력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에는 동성애자 인권모임인 마음006이 95년 이래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존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학우들인 것입니다.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수많은 이들의 눈에는 이들은 아직도 변태행각을 일삼는 사회의 병균으로 인식겠지만, 눈을 돌려보면 그들 역시 사회적 편견과 억압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과내에서 무심코 던지는 농담들(예를 들어 남성들 둘이 함께 앉아 있을 때, 재를 '호모'아니, '변태' 아냐 하며

놀리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친구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변태로 규정하는 언어폭력들, 그리고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그들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폭력들, 이런 것들 역시 성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성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학칙제정에서 만큼은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 어디에나 친구로서 선배로서 항상 있는 '그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서 인식할 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우(女友)가 되기 위해 여우굴에서 백일을 나야했다?

-여우방 소개-

사실 전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관악의 인문대에 사는 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과에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이 관악에 낚설어 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런 인간들을 쟁여주는 선배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꿈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꿈일 줄이야!! 언제부턴가 전 그들이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정말 인간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화가 나더군요. 나를 인간으로 봐 주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나중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슬퍼졌어요.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 아닌 정확한 그 무엇도 아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우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너도 여우가 되지 않으면?" 하고 말입니다. '여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는 상반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바로 여우였다는 것을 발견한 기쁨과 함께 이제는 인간이 아닌 여우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저는 마침내 다른 나이 많은 여우들과 치악산에서 탱크 소리를 들으며 쟁반 비빔밥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인간에서 여우로 화하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되려면 관악의 한 구석진 건물에 있는 여우굴에서 얼마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그 늙은 여우들은 쟁반 비빔밥을 먹고 난 후에야 느낌으로 가르쳐 주더군요. 전 빛도 보지 못한 채 여우굴에 사는 나이든 여우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진짜 여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양의 길로 들어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여우들 간에 논쟁이 붙은 것 같더군요. 이제 굴 밖으로 나가자는 여우와 굴 안에서 내실을 다지자는 여우를 죽으로 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여우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째 굴이 자리하고 있는 지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늙은 여우들의 논쟁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아마 계절 틱이었나 봅니다. 굴은 겨울철에 여우가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이었죠. 젊은 제가 그런데 늙은 여우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저는 가끔씩 찾아오는 늙은 여우들을 만나며 추운 겨울을 여우굴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이제 인간이 아닌 여우로 관악에서, 나아가 세상을 살아갈 일이 암담했습니다. 세상이 여우에게 정해 놓은 길을 나는 얼마나 비껴 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러기엔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때 이미 거의 여우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저는 지금이라도 이 굴을 나가면 다른 인간들보다 더 완벽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우들 몰래 굴을 나갔습니다. 이대로 여우로 사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더군요. 하지만 굴 밖에서 제가 한 일은 인간으로서의 이제까지의 제 삶에 종지부를 찍고 온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굴 밖에서 여우가 된 것이죠.

제가 다시 굴로 돌아오니 그 늙은 여우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학을 가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중년의 여우들이 별로 없고 다른 여우들도 하나씩 지쳐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걱정을 했죠. 또 한 번 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우들은 무너져가는 여우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모든 여우들이 고래 배속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늙은 여우들도 왔죠. 거기서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여우굴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우굴을 라벤더색깔 벽돌로 튼튼하게 짓는 일이든, 여우들이 쉴 수 있는 폭신한 짚을 까는 일이든, 여우굴을 둘러싸고 있는 침대굴을 걷어내는 일이든 서로의 일을 존중하면서 여우들끼리 몸을 비비며 살기로 했죠. 사실 그 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다시 힘이 났죠. 아마 다른 여우들도 그랬겠죠? 그 때의 힘을 모아 지금은 굴 밖 인간들과 연대하여 굴 밖 여우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학생 회칙 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여우들끼리 모여 주중에는 여우굴에서 문학 세미나를, 주말에는 고래 배속에서 이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이 되니 하나 둘 여우글로 들어오는 새 여우들과 함께요. 한 때 지반의 균열로 인해 생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텔갈이를 끝낸 여우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량 여우가 되지 않기 위해 언제나 긴장하며 살고 있죠.

관악이 봄에 푹 빠져있을 때를 즐음하여 여우들이 굴 밖에서 영화제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가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인간과 여우들의 대화가 있는 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여우굴의 위치를 깜빡 잊었네요. 여우굴은 14동 224호에 있고요, 5시까지는 휴게실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습니다. 오시면 아주 다양한 여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마르 왕자, 살랄라 공주, 여짱구, 도우너 등 여러 부류의 여우들이 있습니다. 와서 차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면 좋겠죠? 관악의 인문대에 사는 잠재적 여우들에게도 휴식처가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